



국제회계기준(IFRS)의 주요 내용

김동겸 선임연구원

■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 마련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(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: IASB)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(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: IFRS)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임.

-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재무정보의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처리 기준의 필요로 전 세계 100여 개의 국가에서 이를 도입함.
-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부터 조기 적용을 시작하고 2011년부터 상장 및 등록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함.
 - 국제보험회계기준 중 새롭게 개정된 보험기준서인 IFRS4 Phase II 공개 초안이 2010년 7월 발표되었으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금년 중에 확정될 예정임.

■ 국제회계기준은 회계처리원칙, 공시체계, 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식 등에서 기존의 회계기준과 큰 차이를 보임.

- 첫째, 국제회계기준은 개별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제공하는 규정중심(rule-based) 체계에서 회계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원칙중심(principle-based) 기준으로 전환함.
- 둘째, 개별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체계가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 모든 공시서류가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함.
- 셋째,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황에 대해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의 가치를 원칙적으로 공정가액(fair value)¹⁾으로 평가함.

1) 공정가액이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함.

- 기존 국내회계기준의 경우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들에 대해 역사적 원가²⁾로 평가하였으나 국제회계기준 하에서는 시장참여자에게 적절한 정보제공을 위해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함.

■ 공정가치 회계를 기본 틀로 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의 경우 보험부채 평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, Phase II 초안을 통해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현행이행가치로 설정함.

- Phase II 초안이 공개되기 이전에는 보험계약을 제3자에게 이전한다고 할 때 시장에서 형성될 가 격인 현행유출가치(Current Exit Value: CEV) 관점을 제시함.
 - 그러나, 보험계약이 타 금융상품과 비교해 볼 때 장기적인 계약특성을 보유함에 따라 유동성이 낮은 보험부채 평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들이 제기됨.
- Phase II 초안을 통해 보험회사가 보험부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계약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 는데 소요되는 경제적 가치인 현행이행가치(Current Fulfillment Value: CFV)를 기준으로 보험 부채를 평가하도록 제시함.

■ IASB에서는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요소로 크게 현금흐름(cash flows), 할인율(discount rate), 위험조정(risk adjustment), 잔여마진(residual margin)을 제시함.

- 보험부채의 평가를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보험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요인에 대한 현금흐름을 산출한 후, 각 시나리오별 확률로 가중 평균하여 불편 기대현금흐름(unbiased expected cash flows)을 산출함.
- 이와 같이 산출된 부채의 불편 기대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여 할인을 하게 되는데, Phase II 초안에서는 보험부채 측정을 위해 무위험이자율(risk-free rate)에 비유동성프리미엄을 가산하여 할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함.
- 한편, 현금흐름 추정 시 불확실성 효과를 조정하기 위해 위험조정을 하게 되며, 보험계약 판매시점 에 측정한 당해 보험계약의 이익 부분인 잔여마진은 부채의 일부분으로 계상한 후 기간 경과에 따 라 이익으로 전환함.

2) 역사적 원가주의(historical cost basis)는 일반적인 자산평가에 대한 원칙으로, 자산 취득시점의 지불한 취득원가를 해당 자산이 처분될 때 까지 장부상에 기록하는 방식임.